##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22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 송석준 • 곽규택 • 박정하

김선교 · 김성원 · 조경태

박대출 · 최형두 · 성일종

김미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하게 됨.

하지만 어려운 농어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건대,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어민이 저축을 통한 생활안정을 모도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런저축에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	대한 비과세)
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u>2025년</u> 12월 31일까지 가입한	<u> 2030년</u>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	
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	
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